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99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8.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24



정 보 공 개 서

[(주)지엘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지엘컴퍼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암4길 33, 1층 102(송천동2가)

전화 : 063-273-2220, 팩스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63-273-22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 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지엘컴퍼니 | 스페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암4길 33, 1층 102호(송천동2가)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25.06.27 | 2025.09.24 | 정길원 | 063-272-2220 | |
| | 법인등록번호 | 210111-0021389 | 사업자등록번호 | 530-81-03768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특수관계인 | 해당없음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였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스페소본점 | 스페소 | 2025.12.1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14, 일부호(송천동2가) | 정길원 박한규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스페소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스페소 | 전주 현지인들이 검증한 요리주점형 닭볶음탕 전문점 |
| 상 호 | 스페소 00점 | |
| 상표(서비스표) | 스페소 | 40-2024-0128714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대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4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2년 | | | | |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공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정길원 박한규 | 공동대표 | 2019.10.21 ~ 2024.06.10 | 맥콩 에코시티점 대표 | 매장경영 |
| | 정길원 박한규 | 공동대표 | 2024.06.11 ~ 현재 | 스페소본점 대표 | 매장경영 |
| | 정길원 | 대표 | 2025.06.27~ 현재 | (주)지엘컴퍼니 대표이사 | 회사경영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쏘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4년 12월 31일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스페쏘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스페쏘 | 상표권 43류 | 40-2024-0128714 (24.10.16) | - | 정길원 | 25.12.12~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정길원)로부터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용기간 25년 12월 12일~)

담볶음탕 전문점 스페쏘

II. 가맹본부의 [스페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06.11. 스페쏘본점이 직영점을 시작한 날)

2. [스페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스페쏘본점 | 스페쏘 | 정길원 박한규 | 예정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대3길 14 일부호(송천동2가) |
| (주)지엘컴퍼니 | 스페쏘 | 정길원 | 예정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암4길 33, 1층 102호(송천2가) |

당사는 2025년 6월 27일 설립하여 이후부터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12일 스페쏘본점(대표 정길원, 박한규)을 인수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스페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스페쏘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한식 | 담볶음탕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스페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4.12.31. | | | 2023.12.31. | | | 2022.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 | - | 1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1 | - | 1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상기 가맹점 및 직영점은 양도받은 스페쏘본점의 현황입니다.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5. 바로 전 3년간 [스페소]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4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6. [스페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스페소]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4년 말 가맹점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 | 해당없음 | | | | | | |
| 서울 | - | 해당없음 | | | | | |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대구 | - | 해당없음 | | | | | | |
| 인천 | - | 해당없음 | | | | | |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울산 | -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 - | 해당없음 | | | | | | |
| 강원 | - | 해당없음 | | | | | | |
| 충북 | - | 해당없음 | | | | | | |
| 충남 | - | 해당없음 | | | | | |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 전남 | - | 해당없음 | | | | | | |
| 경북 | - | 해당없음 | | | | | | |
| 경남 | - | 해당없음 | | | | | |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8. [스페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스페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광고 | 해당없음 | 24.1.1~24.12.31 | 0 | 0 | 0 | |
| 판촉 | 해당없음 | | - | - | - | |
| 합계 | 해당없음 | - | 0 | 0 | 0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귀하의 가맹계약 즉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 연락처 | 진주지점 063-275-0021 |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 (주)지엘컴퍼니 |
| 보험기간 |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
| 보험금액 |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 보험금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페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닥트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인테리어, 설비 등 기타비용 | 자율선택, 가맹본부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구고저거래저의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3,300 | 계약 체결 후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반환 | 영업개시 후 | 1. 가맹점 모집 2. 가입비 3. .영업, 운영노하우, 가맹점운영권부여 4.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제공 |
| 교육비 | 3,300 | 계약 체결 후 | 교육시작 1일전 계약해지 | 교육시작 후 | |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 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0 | 계약 체결 후 예치 |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잔존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 후 반환 |

담뱃음탕 전문점 스페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
| 합계 | 9,600 |
| 가맹비 | 3,300 |
| 교육비 | 3,300 |
| 계약 이행증금 | 3,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준: 82.5㎡(25평)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73,000 | 2,920 | | |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업체자율 | 40,000 | 1,6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 25평 기준 |
| 간판 | (협력업체) | 8,000 | 32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 1면 기준 |
| 필수설비 및 홀집기 | 업체자율 | 20,000 | 800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별첨. 참조 |
| POS설비 | 미지정 | 렌탈형 (월사용료 有) |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등 | 5,000 | 200 | 물품공급 1일전 |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공사, 수도시설,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점포의 임대비용, 테라스, 철거비용 등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275천원(33㎡당 금액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공사 시작 3일전 당사에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점포 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신규교육, 수시교육, 양수교육 등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총 매출의 1.65% | 매 익월 5일 | 소멸성 | | |
| POS 사용료 | (협력업체) | 66~5천원 | 익월 5일 | 설치 전 | 설치 후 | 임대비용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30%(가맹본부) 70%(가맹점사업자) | 별도공지 | 실시 전 | 실시 후 | 브랜드 + 상품광고 |
| | 가맹본부 | 50%(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자) | 별도공지 | 실시 전 | 실시 후 | 가맹점모집 + 상품광고 |
| | 가맹본부 | 100%(가맹본부) | - | - | - | 가맹점 모집 |
| 판촉 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지 | 별도공지 | 실시 전 | 실시 후 | 판촉 시 |
| 교육 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 | 교육실시 전 | 교육실시 전 | 교육실시 후 | 교육 필요시 실시 |
| 지연 이자 | 가맹본부 | 미지급 금액 X 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자율선택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33페이지 참조 |

위 내역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구분(기준: 2024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해당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 원부자재 관리 |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별 1회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분기별 1회 | |
| 각종 설비관리 |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 수시 | |
| 접객 및 위생관리 | 직원복장, 고객응대, 매장위생 등 | 수시 |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와 매장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에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한 재 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귀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 ② 귀하는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가맹본부의 사업자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①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②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스페소]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 등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②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신규 가맹희망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맹점의 운영을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되는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스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스페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품목은 [37~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순번 | 품목(단위) | 공급가격 | | 구분 |
|----|--------|------|----|----|
| | | 상한 | 하한 | |
| 1 | | 해당없음 | | |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스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스페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스페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 별지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 | ※ 별지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미성년자 | 주류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 별지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 ※ 별지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닭볶음탕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스페소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가맹계약서에 표기 |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못할 뿐이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라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점포의 하자, 점포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명시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및 당사의 직영점 등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어떠한 보상 등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페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해당없음 | 10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스페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건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41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스페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해지 사유 및 절차

당사 또는 귀하는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42조 계약의 해지]

1. "사업자"가 "회사"의 영업표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밖의 "회사"의 대리인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설명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4. "사업자"가 "회사"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비,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해 지급해야 할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6. "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7. "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8. "사업자"가 "회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사업자"가 "회사"와의 가맹계약 기간 중 전국은행연합회 내지 거래은행에 연체 정보자로 등록된 경우
11.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개별 판촉행사를 진행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별판촉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12. "사업자"가 "회사"가 제시한 광고나 판촉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42조 계약의 해지]

13. "사업자"가 제3자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경우
14. "사업자"가 "회사"가 제시한 필수교육 의무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 "사업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16. "사업자"가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7. "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회사"가 정한 판매하는 메뉴/상품, 조리방법,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18. "사업자"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기타 위법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회사"와 타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신뢰훼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9. "사업자"가 식품위생법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법령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0. "사업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매뉴얼이나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21. "사업자"가 "회사"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③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는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42조 제5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사업법의 개정, 식품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그 외 점포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 이 경우 가맹본부가 단독으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제44조 |
| ○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 또는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계약 규정이 불가피한 경우 | |
| ○ 영업표지의 설정 또는 조건(변경) 및 광고비 등 당사자간의 비용 산정 방법 과 납부시기(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인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 ①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계약체결 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②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승인 → 교육수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 | | 불가 | | |
| 업무위탁 | |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국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스페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닭볶음탕 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스페소]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스페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7:00~:03: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 월 26일 (2월은 24일) 이상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25평기준 2인 | 직접 근무 권장 | 제한없음 |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가능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운영 상태 브랜드관리 및 운영 매장 청결/위생 회계처리/각종설비 관리/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담당자/MS 매장 방문 → 매장운영 상태 등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관리팀 063-272-2220 | |

귀하는 매장의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에 관해서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당사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스페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 브랜드 이미지 + 상품광고 | 30% | 70% (가맹점 수로 균등) 조정가능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광고계획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가맹점모집 + 상품광고 | 50% | 50% (가맹점 수로 균등)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100% | 없음 | | |
| | 가맹점 개별광고 | 없음 | 100% | | |
| 판촉 행사 | 공동판촉 활동 |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 공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지역광고의 경우에는 해당지역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판촉활동 계획에 대해서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47조 손해의 배상]

-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위법/불법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제45조("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가 제45조("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반일 수 **1일당 100천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가 제29조(구입강제품목의 지정)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제39조(영업의 양도 및 대행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자"가 제35조(영업의 표준화)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사업자"는 "회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회사" 또는 "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회사"로부터 할인이나 지원 받은 금전 또는 무상으로 지원 받은 설비나 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도 및 승계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업체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한 경우, "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공사 관련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해양요청 일자 | 위약금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 100만원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 200만원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 300만원 |
|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 100만원*잔여개월 수 |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5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최종 협의 |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피해보상보증보험 가입 | D-30 | |
| 가맹금 납부 | - 당사 계좌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소품 및 초도물품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초도물품공급 | D-2~1(2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나 변호사 자문절차 | | |
|-------------------------------|---------------------------|---|
| 1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의 수령 |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 | 전문가 선택방문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
| 3 | 전문가의 자문 |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
| 4 | 자문확인서 수령 (14일 → 7일 단축희망시) |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5 | 가맹본부 제출 | 가맹본부에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6 | 가맹계약 체결 |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내역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설일로부터 최소 10년으로 한다.)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비고 | 집기 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및 내용 | 절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 문의: 관리팀 063-272-222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스페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
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스페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매장운영 등 | 실습 교육 | 개점 전 | 필수 |
| 수시 교육 |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수시 | 필수 |
| 양수 교육 | 회사 소개, 매장운영 등 | 실습 교육 | 개점 전 | 필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스페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7일 | 3,300 | 메뉴조리, 위생,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매뉴얼 교육 |
| 수시 교육 | 별도계획 | 실비 | 신메뉴 등 |
| 양수 교육 | 7일 | 3,300 | 메뉴조리, 위생,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매뉴얼 교육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전북 | 스페소본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14, 일부호(송천동2가) |
| | | |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6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398,603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근거함 |

상기 직영점 운영현황은 양도받은 스페소본점의 직영점 운영 현황입니다.

별첨 [1]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 설비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 집기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5] : 판매상품 리스트

2025년 7월 1일 기준

| NO | 상품명 | 규격 | 권장가격 | 가격 통보방법 | 비고 |
|----|---------|------|------|-----------------------------------|--------------------------|
| 1 | 닭볶음탕 | 단일규격 | 27천원 | 서면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POS 등 |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2 | 순살닭볶음탕 | 단일규격 | 29천원 | | |
| 3 | 돌판오징어볶음 | 단일규격 | 24천원 | | |
| 4 | 돌판순살바베큐 | 단일규격 | 24천원 | | |
| 5 | 오징어튀김 | 단일규격 | 15천원 | | |
| 6 | 즉석떡볶이 | 단일규격 | 15천원 | | |
| 7 | 골뱅이무침 | 단일규격 | 17천원 | | |
| 8 | 양념치킨 | 단일규격 | 20천원 | | |
| 9 | 후라이드치킨 | 단일규격 | 19천원 | | |

닭볶음탕 전문점 스페소

| | | | | | |
|----|-------------|------|------|--|--|
| 10 | 꼬지어묵탕 | 단일규격 | 15천원 | | |
| 11 | 매운바베큐양념치킨 | 단일규격 | 20천원 | | |
| 12 | 간장치킨 | 단일규격 | 20천원 | | |
| 13 | 순살후라이드치킨 | 단일규격 | 20천원 | | |
| 14 | 순살양념치킨 | 단일규격 | 21천원 | | |
| 15 | 순살매운바베큐양념치킨 | 단일규격 | 21천원 | | |
| 16 | 순살간장치킨 | 단일규격 | 21천원 | | |
| 17 | 계란말이 | 단일규격 | 8천원 | | |
| 18 | 스팸후라이 | 단일규격 | 10천원 | | |
| 19 | 나가사끼짬뽕탕 | 단일규격 | 18천원 | | |
| 20 | 계란찜 | 단일규격 | 8천원 | | |
| 21 | 비빔만두 | 단일규격 | 12천원 | | |
| 22 | 감자튀김 | 단일규격 | 8천원 | | |
| 23 | 떡대 | 단일규격 | 15천원 | | |
| 24 | 반건조오징어 | 단일규격 | 13천원 | | |
| 25 | 빅취포구이 | 단일규격 | 9천원 | | |
| 26 | 아구포뽕통구이 | 단일규격 | 9천원 | | |
| 27 | 브라운치즈찹쌀도넛 | 단일규격 | 9천원 | | |
| 28 | 고구마프라이 | 단일규격 | 8천원 | | |
| 29 | 치즈망고빙수 | 단일규격 | 11천원 | | |
| 30 | 인절미빙수 | 단일규격 | 11천원 | | |
| 31 | 요구르트샤베트 | 단일규격 | 9천원 | | |
| 32 | 멜론샤베트 | 단일규격 | 9천원 | | |
| 33 | 우동 | 단일규격 | 5천원 | | |
| 34 | 짜게치 | 단일규격 | 5천원 | | |
| 35 | 볶음밥 | 단일규격 | 3천원 | | |
| 36 | 주먹밥 | 단일규격 | 3천원 | | |

- ※ 1) 상기 기재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2)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위반시 책임 : 1차 위반(구두 경고), 2차 위반(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차 위반(계약해지)

별첨 [5] : 판매상품 리스트

2025년 7월 1일 기준

| NO | 상품명 | 규격 | 권장가격 | 가격 통보방법 | 비고 |
|----|------|------|------|-----------------------------------|--------------------------------------|
| 37 | 공기밥 | 단일규격 | 1천원 | 서면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POS 등 |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8 | 우동사리 | 단일규격 | 2천원 | | |
| 39 | 라면사리 | 단일규격 | 2천원 | | |
| 40 | 치즈추가 | 단일규격 | 3천원 | | |
| 41 | 쫄면추가 | 단일규격 | 2천원 | | |
| 42 | 소면추가 | 단일규격 | 2천원 | | |
| 43 | 소주 | 단일규격 | 5천원 | | |
| 44 | 맥주 | 단일규격 | 5천원 | | |

별첨 [7]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